

설명회 제06호

2025년 재무제표에 대한 중점심사 회계이슈 및 유의사항

2025. 7. 10.



회계감리2국



보도	2025.6.24.(화) 조간	배포	2025.6.23.(월)
----	------------------	----	---------------

담당부서	회계감리2국 기획감리팀	책임자	팀 장	박기현 (02-3145-7292)
		담당자	선 임	이수진 (02-3145-7295)

2025년 재무제표에 대한 중점심사 회계이슈 사전예고

- ◆ 금융감독원은 회사·감사인이 재무제표 작성·외부감사 수행 시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다음 해에 중점심사할 회계이슈를 매년 6월에 사전 공표
- ◆ 2025년 재무제표에 대한 심사시 중점 점검할 4가지 회계이슈는
 - ① 투자자 약정 회계처리, ② 전환사채 발행 및 투자 회계처리, ③ 공급자금융약정 공시, ④ 종속·관계기업 투자주식에 대한 손상처리
- ◆ 회사와 감사인은 회계이슈별 유의사항을 참고하여 2025년 재무제표 작성 및 외부감사를 충실히 수행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금융감독원은 2026년 중 이번에 선정한 회계이슈에 대한 중점심사를 진행할 예정

[2025년 재무제표에 대한 중점심사 회계이슈]

투자자 약정

✓주주·채권자 등의 투자계약시 다양한 약정이 부가되는 경우, 기업의 의무가 있다면 금융부채로 분류하여야 하는지 확인하고, 관련 내용을 주석에 충실하게 기재

전환사채 발행 및 투자

✓전환사채와 관련하여 콜·풋옵션이 부여된 경우 파생상품 회계처리에 유의하고, 특수관계자 거래, 담보제공 등 주석 공시를 철저히 수행

공급자금융약정 공시 (유통업, 제조업)

✓다수의 공급자로부터 재화를 구매하는 기업이 공급자금융 약정을 이용하는 경우 동 약정의 조건, 관련 장부금액 등을 주석에 상세히 기재

종속·관계기업 투자주식 손상

✓ 당기순손실 지속 발생 등 실적이 악화된 종속·관계기업에 대해 합리적인 가정에 근거한 회수가능액을 산정하는 등 손상검토를 충실하게 수행

I 2025년 재무제표에 대한 중점심사 운영 방안

- **(회계이슈 선정)** 정보이용자가 상장회사의 재무 현황과 관련하여 중요하고 정확한 정보를 적시에 파악하도록 4가지 중점점검 회계이슈를 선정
 - ① 투자자 약정 회계처리, ② 전환사채 발행 및 투자 회계처리, ③ 공급자금융약정 공시, ④ 종속·관계기업 투자주식에 대한 손상처리
 - **(재무제표 공시)** 회사와 감사인은 회계이슈별 유의사항을 참고하여 '25년 재무제표를 충실하게 작성하고 외부감사 업무를 수행
 - **(심사 진행)** '25년 재무제표 작성 및 외부감사가 완료된 이후인 '26년 중 회계이슈별 대상 회사를 선정하고 심사를 실시하여,
 - 기업회계기준을 준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 회사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심사를 완료하고, 위반사항 발견 시에는 엄정하게 조치
- ※ '25.5월까지 48개 회계이슈('13년~'24년 선정)에 대하여 총 393사를 중점심사한 결과, 87사(22.1%)에 대해 회계 위반사항이 발견되었으며 이 중 45사(51.7%)에 대해서는 과징금 등 중조치 부과



II 중점심사 회계이슈 개요 및 유의사항

※ 회계이슈별 유의사항 관련 기업회계기준은 [붙임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투자자 약정 회계처리

◆ 주주·채권자 등의 투자계약시 다양한 약정이 부가되는 경우, 기업의 의무가 있다면 금융부채로 분류하여야 하는지 확인하고, 관련 내용을 주석에 충실하게 기재

- **(선정배경)** 주주나 채권자가 투자 결정시, 계약에 여러 약정사항을 부가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투자자 약정 내용이 점점 복잡·다양해지는 추세
 - 투자자는 투자수익을 확보하거나 리스크를 관리하고, 기업은 투자를 유치하는 한편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한 목적으로, 투자자와 기업 간 또는 투자자 간 다양한 유형의 약정을 체결

- **(주주)** 기업이 투자유치를 위해 **상환전환우선주** 및 **전환우선주***(이하 '전환주식')를 발행하면서 **주주에게 조기상환청구권(풋옵션)**을 부여하거나,

* 상환전환우선주는 만기시 투자금 상환을 요구하거나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고 전환우선주는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우선주로, 특히 사업 초기 기업 등 투자에 자주 활용

- 상장을 전제로 자금을 유치하는 경우, 상장 실패 등 조건 미충족시 주주에게 **자금회수 기회**를 제공(이하 '출구전략')

- **(채권자)** 기업이 사전에 정한 **재무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차입금의 기한이익**을 상실할 수 있는 조항 등(이하 '차입약정')을 부가

□ **(유의사항)** 계약상 의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부분은 **금융부채**로 분류하고 **주식** 공시 요구사항을 충실하게 기재

- ① **전환주식**에 대하여 **옵션**이 부여된 경우 회사에게 **관련 의무**가 존재하는지 살펴보고 이를 **금융부채**로 분류하여야 하는지 검토할 필요

- 또한 옵션이 **정보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약정 사항**이라면 **주식**에 공시

- ② **투자자 출구전략**은 **불확실한 미래** 사건의 발생 여부에 따라 **투자자에게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하는 **거래(조건부 결제조항)**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관련 계약상 의무**를 **금융부채**로 분류하여야 하는지 점검할 필요

- ③ **차입약정**이 있는 **채무증권**이 **비유동**으로 분류되거나, **약정**을 위반하여 **조기 상환**될 수 있는 경우에는 **주식**에 **관련 장부금액** 등 **정보**를 공시

□ **(심사대상 선정)** **소** 업종을 대상으로 **전환주식** 또는 **채무증권** 발행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

회계위반 예시

- ① **[금융부채 미인식]** A사의 종속기업은 기업공개(이하 'IPO')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전환우선주**를 발행하였고, IPO 실패시 **인수인**의 투자수익을 보장하기 위해 **인수인**이 회사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는 **전환우선주 풋옵션**을 부여
연결실체 관점에서 **풋옵션** 행사시 **전환우선주** 보유자가 **연결실체**에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동 **전환우선주**는 **자본**이 아닌 **금융부채**에 해당하나, A사는 **연결재무제표**에 이를 **자본(비지배지분)**으로 계상
- ② **[풋옵션 주식 누락]** B사는 종속기업이 발행한 **전환우선주**를 인수한 C사와 **주주간** 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 등 위반시 B사에 **전환우선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조건부 풋옵션**을 부여하였으나 동 사실을 **주식**에서 누락
- ③ **[약정 위반 주식 누락]** C사가 x1년 발행한 **회사채**에는 **부채비율 500%** 이하 등 **재무비율**을 유지하도록 하는 **특약**이 설정되어 있으나, x3년 C사의 **부채비율**이 **500%**를 초과하게 되어 **기한이익**이 **상실**될 수 있음에도 x3년 **재무제표** **주식**에 **관련 내용**을 미기재

2 전환사채 발행 및 투자 회계처리

◆ 전환사채와 관련하여 **콜·풋옵션이 부여된 경우 파생상품 회계처리에 유의하고, 특수관계자 거래, 담보제공 등 주식 공시를 철저히 수행**

- **(선정배경)** 불공정거래 세력이 상장사의 전환사채를 이용하여 부당 이득을 취하는 과정에서 회계처리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
 - * 「사모 CB·BW를 통한 허위 자금조달 및 허위 사업계획으로 주가 부양 후 부당이득을 취한 조직적 불공정거래 세력 적발·조치(25.3.10. 금융위·금감원 보도자료)」
- 전환사채 관련 사항이 발행 및 투자 기업의 재무제표에 충실하게 표현되어 정보이용자에게 제공될 필요
- **(유의사항)** 전환사채 관련 콜, 풋옵션 등의 주계약과 분리 여부 판단, 유동·비유동 분류, 충실한 주식 공시 등 기업회계기준을 준수
 - ① 전환사채에 포함된 콜, 풋옵션 등이 있는 경우, 주계약과 분리하여야 하는지 판단하고, 분리요건 충족 시 파생상품으로 회계처리
 - ② 만기와 관계없이 발행조건 등에 따라 회계연도말 현재 12개월 이상 상환을 연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유동부채로 분류
 - ③ 특수관계자와의 전환사채 거래 또는 전환사채와 관련하여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등 주식 공시사항을 빠짐없이 기재
- **(심사대상 선정)** 쉐 업종을 대상으로 전환사채 발행 현황, 잔액 비중 등을 감안하여 선정

회계위반 예시

- ① **[파생상품 미분리]** D사가 발행한 전환사채에 포함된 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풋옵션)은 주계약과의 분리요건을 충족하므로 별도의 파생상품으로 회계처리하여 기말에 관련 평가손익을 인식하여야 하나, D사는 이를 분리하여 회계처리하지 않음
- ② **[유동·비유동 분류 위반]** E사가 x1.7.1.에 발행한 전환사채에는 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x2.7.1.부터 행사 가능)이 있어, E사는 x1년말 시점에 12개월 이상 전환사채의 상환을 연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못하므로 이를 유동부채로 분류하여야 했으나, 만기(3년)만 고려하여 비유동부채로 잘못 분류
- ③ **[특수관계자 거래 주식 누락]** F사는 관계기업인 G사가 발행한 제y회 전환사채를 전액 인수하여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데도 이를 특수관계자 거래내역에 미기재
- ④ **[담보제공사실 주식 누락]** H사는 무보증 전환사채를 발행하면서, 전환사채 인수자가 저축은행으로부터 인수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예금, 주식 등을 담보로 제공하였음에도 이를 재무제표 주석에 미기재

3 공급자금융약정 공시

◆ 다수의 공급자로부터 재화를 구매하는 기업이 공급자금융약정을 이용하는 경우 등 약정의 조건, 관련 장부금액 등을 주석에 상세히 기재

□ (선정배경) 개정 기업회계기준*은 '24회계연도부터 공급자금융약정이 기업의 재무에 미치는 영향을 상세하게 기재·공시하도록 요구

* '23.10월 K-IFRS 제1007호(현금흐름표), 제1107호(금융상품: 공시) 개정

○ 공급자금융약정은 팩토링*과 달리 금융약정에 구매기업의 관여도가 높은 점이 특징이며, 역팩토링, 공급망금융, 매입채무금융 등으로 통용

* 공급자가 매출채권을 담보로 자금을 빌리거나 매출채권을 매각하여 자금을 조달

공급자금융약정이란?

▣ (개념) 다수의 공급자로부터 재화를 구매하는 기업이 거래대금 용통을 위한 금융약정의 당사자가 되는 등 높은 수준으로 관여하는 경우를 의미

○ 이러한 금융약정은 금융회사가 공급자에게 우선 대금을 지급(공급자의 조기 대금회수)하고 나중에 구매자로부터 대금을 회수(구매기업의 대금 지급기한 연장)

▣ (효과) 구매기업의 우량한 신용을 활용하여 공급자는 유리한 조건으로 매출채권을 조기에 현금화할 수 있고, 구매기업은 채무 상환 업무를 금융기관에 일임하여 운영비용을 절감



▣ (사례) 다음 약정들은 공급자금융약정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음

- 1) 은행기한부신용장 (Banker's Usance) 공급자가 발행한 환어음을 은행이 할인 매입하고, 은행은 환어음 만기시점에 구매기업으로부터 대금 회수
- 2) 구매전용카드 구매기업이 구매대금에 대한 카드거래승인을 받으면, 카드사가 공급자에게 먼저 대금을 지급한 후, 구매기업이 만기일에 카드 대금을 상환하며, 약속어음과 같이 구매기업이 만기일을 지정
- 3) 구매자금대출 공급자가 구매기업을 지급인으로 하는 환어음을 발행한 후, 은행에 추심하여 물품대금을 받고, 구매기업 명의의 대출금으로 지급 제시된 환어음 대금을 결제
- 4)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구매기업의 신용과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공급자 명의의 대출 취급, 외상매출채권 만기일에 구매자의 결제대금으로 대출금 상환
- 5) 구매론 구매기업이 물품을 제공받고 은행에 결제내역을 전송하면 은행이 승인한 내역에 대해 지급을 보장하고, 필요시 공급자는 만기일 이전에 할인하여 지급받을 수 있음
- 6) 상생결제시스템 대기업의 1차 협력사가 2·3차 협력사에 지급하는 물품대금을 구매기업(대기업)의 신용도를 활용하여 낮은 금융비용으로 결제 대금 조기 현금화 가능

- **(유의사항)** 공급자금융약정(이하 '약정') 관련 주식 공시 요구사항을 충실하게 기재
 - ① 현금흐름표와 관련하여 다음의 내용을 통합하여 공시
 - 약정의 조건(예: 연장지급 조건, 제공된 담보나 보증)
 - 기초·기말의 약정 관련 금융부채 장부금액 및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항목, 약정 관련 금융부채와 약정 외 매입채무의 지급기일 범위 비교 등
 - ② 금융상품의 유동성위험과 관련하여 공급자금융약정에 따른 한도 약정 사용에 관한 사항
- **(심사대상 선정)** 유통업(도·소매업), 제조업(자동차, 반도체, 의약품 등)을 대상으로, 현금흐름표 관련 주식, 기업 규모 등을 고려하여 공급자 금융약정을 이용할 가능성이 높은 회사를 선정

4 종속·관계기업 투자주식에 대한 손상처리

◆ **당기순손실 지속 발생 등 실적이 악화된 종속·관계기업에 대하여 합리적 가정에 근거한 회수가능액을 산정하는 등 손상검토를 충실하게 수행**

- **(선정배경)** 기업의 실적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종속·관계기업 투자주식에 대한 손상차손 발생 가능성 증가
 - 종속·관계기업의 손상징후가 존재함에도 손상검토를 수행하지 않거나 합리적 근거 없이 검토하여 손실을 과소계상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
- **(유의사항)** 매 보고기간 말 종속·관계·공동기업 투자주식에 대해 손상 징후를 검토하고, 징후가 있다면 합리적인 가정에 근거하여 손상평가 수행
 - ① 내·외부 정보*를 종합하여 손상징후를 살피고, 징후가 있다면 회수가능액을 추정하여 장부금액이 초과하는 부분은 손상차손 인식
 - * 내부: 자산의 경제적 성과가 예상 수준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내부보고 등
 - 외부: 기업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유의적 변화(업황 등)가 예상되는 경우 등
 - ② 회수가능액은 평가기법 및 투입변수(할인율, 매출성장률, 원가율 등) 등에 대한 충분한 근거와 합리적 가정을 바탕으로 추정
- **(심사대상 선정)** 쉐 업종을 대상으로 종속·관계·공동기업 투자주식 비중 및 관련 손익 변동 등을 감안하여 선정

회계위반 예시

- ① **[회수가능액 과대 산정]** I사는 J사 주식(종속기업투자주식)에 대하여 x1년말 기준으로 회수가능액을 산정하면서, J사의 부실 재고자산이 x2년 중 모두 외부로 판매될 것으로 가정하는 등 실현 불가능하고 비정상적인 가정을 기초로 하여 회수가능액을 과대 산정하고 J사 주식에 대한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음
- ② **[손상징후 판단 오류]** K사는 종속기업인 L사의 재무상황 악화로 L사에 대한 대여금을 출자전환하고 추가 자금지원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L사의 청산을 결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L사는 사실상 매출이 전무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종속기업투자주식의 손상징후가 없다고 판단하고 회수가능액에 대한 합리적 추정 없이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음
- ③ **[손상징후 판단 오류]** M사는 공동기업인 N사의 대외 영업환경이 급격히 악화되어 당기순손실 증가, 완전자본잠식 등 손상징후가 발생하여 연결재무제표 상 지분법 손실을 인식하고 공동기업투자주식 전액을 감액하였으나, 원가법을 적용하는 별도 재무제표에서는 N사가 진행하고 있는 외부 투자자금 유치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손상검토를 미수행

III 향후 계획

- 2025년 재무제표 작성 및 외부감사 시 회사 및 감사인이 중점점검 회계 이슈를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효과적으로 안내할 예정
-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안내문을 발송하는 한편, 회계업무 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도 실시

*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코넥스협회, 한국공인회계사회

[붙임1] 회계이슈별 관련 기준서 주요 내용
[붙임2] 중점심사 회계이슈 선정 현황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

1 투자자 약정 회계처리

- **K-IFRS 제1032호(금융상품:표시)**에 따르면 금융상품은 법적 형식이 아니라 실질에 따라 재무제표에 분류되어야 하며, 기업이 계약상 의무를 결제하기 위한 현금 등 금융자산의 인도를 회피할 수 있는 무조건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이러한 의무를 금융부채의 정의를 충족
 - 예를 들어, 우선주의 발행자가 확정되었거나 결정가능한 미래 시점에 확정되었거나 결정가능한 금액을 보유자에게 의무적으로 상환해야 하거나, 우선주의 보유자가 발행자에게 특정일이나 그 이후에 확정되었거나 결정가능한 금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면 이러한 우선주는 금융부채에 해당
 - 또한 현금 등 금융자산으로 자기지분상품을 매입할 의무가 포함된 계약의 경우에는 상환금액(예: 옵션계약의 행사가격 등)의 현재가치에 해당하는 금융부채 발생
 - 금융상품에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하거나 금융부채로 분류될 그 밖의 방법으로서의 결제가 발행자와 보유자 모두가 통제할 수 없는 불확실한 미래 사건의 발생 여부에 달려있는 조건부 결제조항이 포함된다면, 특정한 예외사항을 제외하고는 해당 금융상품은 발행자가 결제를 회피할 수 있는 무조건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금융부채에 해당
- **K-IFRS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는 주석 사례로 ‘재무제표에 인식하지 아니한 계약상 약정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등 정보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약정사항은 주석으로 공시
- **K-IFRS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는 보고기간말 장기차입약정 위반으로 유동으로 분류된 부채와 관련하여 보고기간말과 재무제표 발행승인일 사이에 해당 위반사항이 해소되거나, 해소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대여자로부터 부여받은 경우 기업회계기준서 제1010호 ‘보고기간후사건’에 따라 수정을 요하지 않는 사건으로 주석에 공시
 - 또한 ‘약정사항이 있는 비유동부채’가 12개월 이내에 상환될 수 있는 위험을 재무제표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다음의 정보를 주석에 공시

- (1) 약정사항에 관한 정보(약정사항의 성격 및 기업이 약정사항을 준수해야 하는 시점 포함)와 관련 부채의 장부금액.
- (2) 기업이 약정사항을 준수하기 어려울 수 있음을 나타내는 사실과 상황이 있다면 그 내용(예를 들어, 기업이 잠재적 위반을 피하거나 완화하기 위해 보고기간 중 또는 보고기간 후 조치를 취한 사실). 그러한 사실과 상황에는 보고기간 말 현재 기업의 상황을 기초로 평가한다면 약정사항이 준수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실도 포함될 수 있다.

□ **K-IFRS 제1107호(금융상품:공시)**에서는 회계기간에 차입약정의 조건을 위반하여 대역자가 조기 상환을 요구할 수 있다면 기업은 다음의 정보를 공시하여야 하나, 보고기간 말이나 그 전에 계약 위반 상태가 해소되거나 차입조건을 재협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1) 회계기간 중 이러한 차입금의 원금, 이자, 감채기금, 상환조건의 (채무) 불이행 명세
- (2) 보고기간 말 현재 채무가 이행되지 않은 차입금의 장부금액
- (3) 재무제표의 발행이 승인되기 전에 (채무)불이행의 해소 여부 또는 차입 조건의 재협상 여부

② 전환사채 발행 및 투자 회계처리

□ **K-IFRS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에 따르면 부채는 다음의 경우에 유동 부채로 분류하며, 그 밖의 모든 부채는 비유동부채로 분류

- (1) 정상영업주기 내에 결제될 것으로 예상
 - (2) 주로 단기매매 목적으로 보유.
 - (3)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결제하기로 되어 있음
 - (4) **보고기간말 현재 보고기간 후 적어도 12개월 이상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음**
- 보고기간 후 적어도 12개월 이상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기업의 권리는 실질적이어야 하고 보고기간말 현재 존재하여야 하며, 기업이 차입약정 상의 특정 조건(이하 '약정사항')을 준수하는지 여부에 좌우될 수 있음
 - 즉, 만약 기업이 보고기간말 또는 보고기간말 이전에 약정사항을 준수하도록 요구받는다면, 이러한 약정사항은 보고기간말 현재 그러한 권리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영향을 미치나, 만약 기업이 보고기간 후에만 약정사항을 준수하도록 요구받는다면 이러한 약정사항은 영향을 미치지 않음

□ **K-IFRS 제1109호(금융상품)**에서는 특정 금융상품에 부가되어 있더라도, 계약상 해당 금융상품과는 독립적으로 양도할 수 있거나 해당 금융상품과는 다른 거래 상대방이 있는 파생상품은 내재파생상품이 아니며, **별도의 금융상품으로 인식토록 규정**

※ 「**전환사채 콜옵션 회계처리**」에 대한 감독지침('22.5.4.): 전환사채 발행자에게 제3자 지정 콜옵션이 부여된 경우 발행자는 재무제표에서 해당 콜옵션을 「**별도의 파생상품자산**」으로 회계처리하도록 안내

○ 복합계약의 주계약이 채무상품인 경우에는 **다음**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내재파생상품을 주계약과 분리하여 파생상품으로 회계처리

(1) 내재파생상품의 경제적 특성·위험이 주계약의 경제적 특성·위험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지 않음

(2) 내재파생상품과 조건이 같은 별도의 금융상품이 파생상품의 정의를 충족

(3) 복합계약의 공정가치 변동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않음(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에 내재된 파생상품은 분리하지 아니함)

○ 상기 (1)에서 내재파생상품의 경제적 특성과 위험이 주계약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지 않은 사례와 관련하여, 주계약인 채무상품이나 보험계약에 내재된 콜, 풋, 중도상환옵션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계약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지 않음

□ **K-IFRS 제1024호(특수관계자 공시)**에서는 회계기간 내에 특수관계자거래가 있는 경우, 기업은 이용자가 재무제표에 미치는 특수관계의 잠재적 영향을 파악하는 데 필요한 거래, 약정을 포함한 채권·채무 잔액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특수관계의 성격도 공시하며, **최소한 다음 내용을 포함**

(1) 거래 금액

(2) 약정을 포함한 채권·채무 잔액과 다음 사항

(가) 그 채권·채무의 조건(담보 제공 여부 포함)과 결제할 때 제공될 대가의 성격

(나) 그 채권·채무에 대하여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보증의 상세 내역**

(3) 채권 잔액에 대하여 설정된 대손충당금

(4) 특수관계자 채권에 대하여 당해 기간 중 인식된 대손상각비

○ 공시하는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의 사례로 금융약정에 따른 이전(대여와 현금출자나 현물출자 포함) 및 보증이나 담보의 제공 등이 있음

□ **K-IFRS 제1107호(금융상품:공시)**에 따르면 부채 또는 우발부채의 담보로 제공한 금융자산의 장부금액과 담보와 관련된 조건을 공시

○ 또한 **K-IFRS 제1016호(유형자산)**에 따르면 소유권이 제한되거나 부채의 담보로 제공된 유형자산의 내용과 금액을 공시

3 공급자금융약정 공시

- **K-IFRS 제1007호(현금흐름표)**는 재무제표이용자가 공급자금융약정이 기업의 부채와 현금흐름 그리고 유동성위험 익스포저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공시하도록 규정
 - 공급자금융약정은 금융제공자가 기업이 공급자에게 갚아야 할 금액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하고, 기업은 공급자가 지급받는 날과 같거나 이후에 **약정 조건에 따라 금융제공자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하는 특성**(단순 신용보강을 위한 약정 또는 갚아야 하는 금액을 공급자에게 직접 결제 하는데 사용하는 상품은 공급자금융약정이 아님)
 - 이러한 약정은 청구서의 지급기일과 비교하여 기업에 **연장지급 조건을 주거나 기업의 공급자에게 조기지급 조건을 줌**
 - 공급자금융약정과 관련하여 **다음의 내용을 통합하여 공시**
 - (1) **약정의 조건**(예: 연장지급 조건과 제공된 담보나 보증). 약정 간 조건이 상이한 경우 그 조건은 별도로 공시
 - (2) 보고기간의 **시작일과 종료일**에 다음 내용을 공시
 - (가) 공급자금융약정에 해당하는 금융부채의 **장부금액** 및 그 금융부채와 관련하여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항목
 - (나) (가)에 따라 공시하는 금융부채 중 공급자가 금융제공자에게서 이미 금액을 받은 부분에 해당하는 **장부금액** 및 그 금융부채와 관련하여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항목
 - (다) (가)에 따라 공시하는 금융부채의 **지급기일 범위**와 공급자금융약정에 해당하지 않는 **비교 가능한 매입채무의 지급기일 범위**(예: 청구서 발행일 후 30일 ~ 40일)
 - (3) (가)에 따라 공시한 금융부채 장부금액의 **비현금 변동 유형과 영향**. 비현금 변동의 예로는 사업 결합, 외환차이 또는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사용을 수반하지 않는 그 밖의 거래들로 인한 영향이 있다.
- **K-IFRS 제1107호(금융상품:공시)**는 금융상품의 유동성위험 공시 요구 사항에 대한 사례로 **공급자금융약정(관련 한도약정을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을 추가
 - 또한 실무적용지침에서 유동성위험에 대한 집중을 식별할 수 있는 사례 중 하나로 **공급자금융약정(원래 공급자에게 갚아야 할 금융부채의 일부를 금융제공자에게 집중시킴)**을 별도로 언급

4 종속·관계기업 투자주식에 대한 손상처리

- K-IFRS 제1036호(자산손상)에서는 제1110호(연결재무제표)와 제1028호(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에 따른 종속기업과 관계기업 등에 대해 보고기간 말마다 자산손상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하고 그러한 징후가 있다면 해당 자산에 대하여 회수가능액을 추정하여 이를 초과하는 장부금액은 손상차손으로 처리하도록 규정
 - 자산손상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할 때는 최소한 외부정보(시장에서 기업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유의적 변화 예상, 순자산 장부금액이 기업의 시가총액보다 많은 경우 등)와 내부정보(자산의 진부화, 경제적 성과가 예상 수준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내부보고 등)의 징후를 고려
 - 회수가능액은 자산의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과 자산의 사용가치 중 더 많은 금액으로 정의되며, 두 금액 중 하나가 자산의 장부금액을 초과한다면 자산이 손상되지 않았으므로 다른 금액을 추정할 필요 없음
 - 사용가치는 자산의 남은 내용연수에 걸쳐 존재할 다양한 경제상황에 대한 경영진의 최선의 추정치가 반영된 합리적이고 뒷받침되는 가정 등을 기초로 추정
- K-IFRS 제1110호(연결재무제표)에서는 투자자가 다음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피투자자를 지배한다고 규정
 - (1) 피투자자에 대한 힘이 있다.
 - (2) 피투자자에 관여함에 따라 변동이익에 노출되거나 변동이익에 대한 권리가 있다.
 - (3) 투자자의 이익금액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피투자자에 대한 자신의 힘을 사용하는 능력이 있다.
- K-IFRS 제1028호(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에서는 피투자자의 이사회나 이에 준하는 의사결정기구에 참여, 배당이나 다른 분배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것을 포함하여 정책결정과정에 참여 등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하게 되면 피투자자를 관계기업으로 보며, 약정상 공동 지배력을 보유하는 둘 이상의 당사자들이 그 약정의 순자산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는 공동약정을 공동기업으로 규정
- K-IFRS 제1027호(별도재무제표)에서는 별도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종속기업, 공동기업,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은 원가법, 공정가치법, 지분법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회계처리하도록 규정

붙임2

중점심사 회계이슈 선정 현황

<p>'24년 선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수익인식 회계처리 ② 비시장성 자산평가 ③ 특수관계자거래 회계처리 ④ 가상자산 회계처리 	<p>'23년 선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⑤ 매출채권 손실충당금 회계처리 ⑥ 전환사채(CB) 콜옵션 회계처리 ⑦ 장기공사수익 회계처리 ⑧ 우발부채 공시
<p>'22년 선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⑨ 新수익기준 관련 회계처리 ⑩ 현금및현금성자산 실재성 ⑪ AC금융자산 손실충당금 ⑫ 사업결합 회계처리 	<p>'21년 선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⑬ 종속·관계기업 투자주식 손상 ⑭ 특수관계자에 대한 수익인식 ⑮ 금융부채 인식 및 측정 ⑯ 영업이익 표시 및 영업부문정보 공시
<p>'20년 선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⑰ 재고자산 회계처리 ⑱ 무형자산(영업권, 개발비 외) 평가 ⑲ 국외매출 회계처리 ⑳ 이연법인세 회계처리 	<p>'19년 선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㉑ 新리스기준서 적용 ㉒ 충당부채·우발부채 회계처리 ㉓ 장기공사계약(조선·건설 외) ㉔ 유동·비유동 분류
<p>'18년 선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㉕ 新수익기준 관련 회계처리 ㉖ 新금융상품 공정가치 측정 ㉗ 비시장성 자산평가 ㉘ 무형자산 인식·평가 	<p>'17년 선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㉙ 개발비 인식·평가 ㉚ 국외매출 회계처리 ㉛ 사업결합 회계처리 ㉜ 매출채권 대손충당금
<p>'16년 선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㉝ 비시장성 자산평가 ㉞ 수주산업 공시 ㉟ 반품·교환 회계처리 ㊱ 파생상품 회계처리 	<p>'15년 선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㊲ 미청구공사(초과청구공사) ㊳ 비금융자산 공정가치 평가 ㊴ 영업현금흐름 공시 ㊵ 유동·비유동 분류
<p>'14년 선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㊶ 매출채권 매각 회계처리 ㊷ 특수관계자 거래 ㊸ 영업이익·이자비용 산정 ㊹ 이연법인세자산 	<p>'13년 선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㊺ 퇴직급여부채 측정 ㊻ 무형자산(영업권, 개발비) 평가 ㊼ 신종증권 등의 자본·부채 분류 ㊽ 장기공사 수익인식